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종류 및 연번	제명	최신 개정연혁	부수된 규칙
회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2018. 9. 30. (제25차 개정)	일반규칙
			임시규칙
세칙 제1호	선거시행세칙	2018. 9. 30. (제21차 개정)	선거시행규칙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시행규칙
			해당 학생총투표에만 적용되는 학생총투표시행규칙
세칙 제2호	재정운용세칙	2018. 4. 8. (제6차 개정)	재정운용규칙
세칙 제3호	회의진행세칙	2017. 9. 3. (제3차 개정)	회의진행규칙
세칙 제4호	사무처리세칙	2018. 4. 8. (제5차 개정)	사무처리규칙
세칙 제5호	기록물관리세칙	2017. 9. 3. (폐지)	(폐지)
세칙 제6호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	2018. 4. 8. (제1차 개정)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세칙 제7호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2018. 4. 8. (제2차 개정)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1960. 10. 28. 제 정	1968. 9. 17. 일부개정
1971. 9. 21. 일부개정	1973. 4. 12. 일부개정
1980. 3. 28. 전부개정	1984. 5. 30. 전부개정
1985. 3. 11. 일부개정	1985. 10. 10. 일부개정
1988. 4. 20. 일부개정	1991. 9. 14. 전부개정
1995. 3. 27. 일부개정	1999. 3. 25. 일부개정
2003. 4. 10. 일부개정	2004. 10. 25. 전부개정
2006. 9. 15. 일부개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전부개정	2014. 3. 23. 일부개정
2014. 9. 28. 일부개정	2015. 10. 4. 일부개정
2017. 1. 22. 일부개정	2017. 3. 19. 일부개정
2017. 4. 9. 일부개정	2017. 9. 3. 전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2018. 9. 30. 일부개정

전문

제1장 총칙 ····· 1~12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 13~24

제2절 학생총회 ····· 25~34

제3절 학생총투표 ····· 35~45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46~73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 74~94

제6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 95~98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 99~108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 109~115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 116~123

제2절 학부·과·반 학생회 ····· 124~130

제3절 동아리연합회 ····· 131~138

제5장 특별기구 ····· 139~153

제6장 선거 ····· 154~159

제7장 재정

제1절 통칙 ····· 160~161

제2절 자산·배분 ····· 162~165

제3절 회계·심의 ····· 166~171

제8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 개정 ····· 172~177

제2절 세칙·규칙 ····· 178~182

제3절 해석·규정집 ····· 183~185

부칙

전문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는 대학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대학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4·18의거의 정신은 학원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전 고대인의 뜻을 모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탄생시켰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반 백 년의 세월 동안 두 번의 강제 폐지와 숱한 탄압을 겪으면서도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야성으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어두운 시대에 겨레의 횃불이기를 자임했던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남아있음을 상기하면서, 또한 역사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학생회 운영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담아 1960년 10월 28일 제정되고 25차에 걸쳐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018년 9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이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회원】 ① 입학·편입학·소속변경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③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④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수료생은 수료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⑥ 준회원・수료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밖에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⑦ 국내・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⑧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이 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편찬・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각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이 회는 집회・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⑧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⑨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⑩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자치단체】 ①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학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② 이 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 ① 이 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3. 산하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② 제96조제4항에 의해 구성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학교 운영 참여】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 이 회는 이 회가 참여하도록 된 학교 기구 또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구 중 학사제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와 제94조에 따른다.

제9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과 부회장
3. 각 학부·과·반 학생회장과 부회장
4. 각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과 분과장
5.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6.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 처리】 ① 이 회 각 기구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 이 회칙에서 공고하도록 한 사항은 회원들이 해당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표 게시판과 인문·사회계캠퍼스, 자연계캠퍼스, 녹지캠퍼스 각 1개 이상의 거점 게시판,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록물 관리】 ①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④ 이 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⑤ 이 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열람·활용할 수 있다.

⑥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이 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⑦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회의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⑧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3조【기본이념】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의결기구의 위계】 ① 이 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 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기】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6조【의장】 ①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 직무의 제한】 ① 의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학생회장단이 의장일 때,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의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건의안
3.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③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는 중앙운영위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8조【사무·재정】 ①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결기구의 재정은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제19조【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제4항 혹은 제52조제4항에 따라 각 의결기구의 의장이 소집요구 없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의 결정으로 학생총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④ 제2항에도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의 발의】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의 안건 발의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회의의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21조【연서의 심의】 ①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한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위 의결기구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연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개의 직후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서의 서식 및 기재 정보가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각 의결기구는 연서가 무효하다고 볼 수 있다.
④ 각 의결기구의 구성원과 방청인들은 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제22조【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학생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3조【방청·발언권】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25조【지위】 학생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6조【구성】 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7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생총회가 소집되면 중앙운영위원 중 중

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의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8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소집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0조【운영 방법의 결정】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 개의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논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공청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확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개의·의결요건】 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2천 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4천 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회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이 제의하여 학생총회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4호의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3조【안건】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제34조【안건 위임】 ①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② 개의하지 못한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5조【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36조【투표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37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38조【시행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9조【성립・의결요건】 ①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역투표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투표관리를 담당한다. 각 지역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소속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⑤ 그 밖에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 3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결과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

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 때 제39조제3항에도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단, 명부상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45조【준용】 그 밖에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6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47조【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3.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제1항제3호는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도 대의원으로 한다.

③ 입학정원과 수업연한의 곱의 1.5배가 400명을 넘는 학부·과·반 학생회는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제 개편 등으로 인하여 신설·폐지된 학부·과·반 학생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4년이 될 때까지는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정회원 수가 400명을 넘을 때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폐지된 학부·과·반 학생회의 부회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되는 해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입학정원을 특정할 수 없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경우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정회원 수가 400명을 넘을 때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반과 동아리연합회가 신설·폐지·개편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 의석의 신설·폐지 등을 의결한다.

⑦ 특별기구는 제55조에 의거한 소집 공고 및 제56조에 의거한 사전 배포 자료를 근거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해당 특별기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정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1일 전까지 대의원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의원직을 신청한 특별기구의 장은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개의 직후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 직책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산회하면 소멸한다.

⑧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때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48조【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9조【대의원의 결석】 ① 대의원이 사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석계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석계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결석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를 참작하여 심의한다.

제50조【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51조【정기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의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까지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임시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6.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7. 제107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8. 제172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

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개의 직후 긴급한 사항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다. 긴급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긴급한 사항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회한다.

제53조【위원회】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개의·의결요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달리 정한 위원회
2. 상임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설 위원회
3. 특별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특정 기간 동안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5. 제71조의 회칙·세칙·규칙·학칙에 관한 사항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종류
2. 위원회의 소관사항
3. 위원회의 구성원과 개의·의결요건
4.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과 종료일

⑤ 제54조에 의해 설치된 예·결산특별위원회에는 본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예·결산특별위원회】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에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5조【소집 공고】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52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56조【자료의 사전 배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보고·인준 사항, 각 기구의 총학생회비 예산안·결산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비치하는 방법과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개의·의결요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2.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4.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58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6조제2항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혹은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4.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70조제2항의 총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⑥ 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한다. 단,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로 표결하거나 비표를 정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59조【안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5.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6.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7. 제107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8. 제172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9. 제179조제4항에 따라 발의된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0조【안건 위임】 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회의의 산회가 결정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5.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개의하지 못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61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3조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 설치와 폐지를 의결한다.

제63조【결정·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제106조제1항에 따라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65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제107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이 있으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임시로 유효하다.

1.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

2.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의 임명

3. 산하 국서의 신설·폐지와 변경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67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제명 또는 합병을 의결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47조제7항에 따라 기구장에게 산회 시까지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기구를 의결한다.

제68조【감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제69조【징계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산하기구, 특별기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회원 또는 다른 회원의 인권을 침해한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에 따른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④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제67조제2항, 제148조, 제149조에 따른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⑥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2항제3호와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⑦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제66조제2항에 따른다.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70조【재정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출된 예산안·결산 중 문제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기구에 이번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171조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회칙·세칙·규칙·학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세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고려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72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73조【학사제도협의회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94조제4항에 의해 학사제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사제도협의회에서의 최종 의결 전에 안건에 대한 동의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74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75조【중앙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장
3.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76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은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7조【중앙운영위원의 결석】 ① 중앙운영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석계의 제출은 중앙운영위원회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석계에는 결석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75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지는 때 외에는, 3회 이상 결석한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속 기구에 결석 사실을 공고하고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를 참작하여 심의한다.

제78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일 때,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제83조에도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회의를 개의하며,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되는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79조【정기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개의 전에 중앙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장소의 변경이 공지되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의 요일과 시각을 중앙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매월 말 익월의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중앙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0조【임시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제81조【특별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④ 특별위원회 구성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활동 내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 내역, 예산안・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인준된 후 첫 번째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인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에 따른다.

제83조【개의・의결요건】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85조【안건】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60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세칙에서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때에는 제1항에도 해당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학생총회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28조제3항과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이 신설・폐지・개편되면 제47조제6항에 따라 소집 공고일 전까지 대의원 의석의 신설・폐지 등을 의결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매 학기 개강일 전 30일 이후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1조의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87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11조제2항과 제1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을 임명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66조제1항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88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41조에 따라 특별기구 인준 요청을 심의하여 인준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43조에 따라 특별기구를 재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재인준 요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제89조【선거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0조【재정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3조제7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제174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세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에 따른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임시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92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직전 학기 총학생회비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2%를 초과하는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총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

다. 이 때 총학생회장은 협의·활동 직후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3조【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를 대표하여 학교 기구의 학생 대표가 되는 자의 배석 하에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논의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94조【학사제도협의회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학사제도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학부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학사행정 사무 관련 학사제도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변동이 필요한 사항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사제도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보고받는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학사제도협의회 위원을 선출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사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95조【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끝난 후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과 각 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96조【권한·업무】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회칙·세칙·규칙의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을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비상대책위원”으로 본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7조【위원장】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제98조【임시 중앙집행위원회】 ①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임시 중앙집행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각 동아리연합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며, 그 외 임시 중앙집행위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각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임시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99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0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제101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총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와 위원장·위원에 관하여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2조【대외적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72조제1항 또는 제92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의무】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장단 또는 총학생회장단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제93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임기・연임금지】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해의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그 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제155조제3항에 의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해의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후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제105조【총학생회 인수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재선거・보궐선거(제155조제3항에 의한 재선거는 제외한다)로 당선되었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전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석
3. 후임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4. 기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제104조제1항에 의해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해산한다.

제106조【사퇴】 ①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7조【탄핵】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2.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

③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부의 의결 이후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⑦ 탄핵안은 학생총회일 때 제31조, 학생총투표일 때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⑧ 총학생회장만 탄핵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8조【직무정지】 제107조제5항에 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을 경우 그 대상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 부의안이 부결되거나, 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09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110조【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1. 중앙집행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국원

제111조【중앙집행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이 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을 중앙집행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총학생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중앙집행위원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2조【국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중앙집행위원 전원에 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서 추천한 인원을 중앙집행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총학생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중앙집행위원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3조【업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개의·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114조【운영】 총학생회장단 혹은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5조【집행위원장회의 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동종 업무 담당 국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116조【지위】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의 단과대학·독립학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17조【독립학부】 독립학부는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이다.

제118조【회원】 ①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재학생·휴학생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②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부·학과로 편입·소속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복수전공자는 전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가진다.

④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부・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부・학과가 포함된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 전공을 전교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집단위로 입학해서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부・학과를 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9조【의결기관】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학생회장단】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단과대학・독립학부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1조【집행기관】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재정】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제170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7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자치규칙】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의결기관의 의결로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준칙> 또는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준칙> 또는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을 경우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1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학부·과·반 학생회

제124조【지위】 학부·과·반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의 학부·과·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25조【회원】 ① 각 학부·과·반에 소속된 재학생·휴학생은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②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학부·학과로 편입·소속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복수전공자는 전적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하나의 과로 구성된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산하기구로 과·반 학생회를 둘 때,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학부·학과로 편입·소속변경한 자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과·반 학생회를 정한다.
④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결기관】 ① 학부·과·반 학생총회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학부·과·반 학생회는 학부·과·반 학생총회와 학부·과·반 운영위원회의 중간 위계를 가지는 의결기구로 학부·과·반 확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부·과·반 학생회는 학부·과·반 학생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으로 학부·과·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7조【학생회장단】 ① 학부·과·반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반을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가 속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운영위원이 된다.

② 학부·과·반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입학정원과 수업연한의 곱의 1.5배가 400명을 넘는 학부·과·반 학생회는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학부·과·반 학생회장(단)은 학부·과·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④ 학부·과·반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8조【집행기관】 ① 학부·과·반 학생회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부·과·반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재정】 학부·과·반 학생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0조【자치규칙】 ① 학부·과·반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학부·과·반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반 학생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반 의결기관의 의결로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학부·과·반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을 경우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1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131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창조적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동아리들의 연합체이다.
제132조【구성】 ① 이 회는 소재지에 따라 복수의 동아리연합회를 둘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동아리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중앙동아리로 구성된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3조【의결기관】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회장단】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해당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부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5조【집행기관】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동아리연합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6조【분과・분과장】 ① 분과는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조직이다.
②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분과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7조【재정】 ①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는 제170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7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자치규칙】 ① 동아리연합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기구

제139조【지위】 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②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140조【성립 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2. 이 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 단체 또는 대표 단체

제141조【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14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추천이 있는 추천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자치규칙에는 성립 목적,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1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제7호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서약의 방식과 원칙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42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41조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3조【재심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년도 활동보고서(기구장의 선출과 회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원명부
3. 자치규칙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의 재인준 요청에 대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한다.

③ 위에 명시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특별기구의 재인준 요청에 대한 안건 상정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인준 요청에 대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상정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48조제1항의 기준에 의거해 심의 부결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기구는 심의 부결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서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특별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재인준】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43조제2항,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재인준 요청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재인준 요청안이 부결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즉시 제148조, 제149조에 의거한 특별기구 징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제148조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49조에 따른 제명 및 합

병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5조【협의】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의 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구는 필요한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146조【기구장】 ①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를 대표한다. 단, 평의회 체계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는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특별기구장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선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합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특별기구 자치규칙에 특별기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47조제7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특별기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특별기구의 기구장은 한시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147조【재정】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특별기구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특별기구는 제170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기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7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비 배분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 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경고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제17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날 때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단, 제1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6. 특별기구가 회칙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기한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으면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

이 없거나 부실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③ 제171조제3항에 따른 징계 안건은 제144조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논의한다. 이 때 재인준 요청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안건에 따른 징계와 포괄하여 징계를 내린다.

제149조【제명·합병】 ①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을 때(이전의 경고는 경고를 받은 회기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3. 이 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0조【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144조의 과정에 따른 징계사항이 의결되면 의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의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둔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 동안 징계가 결정된 특별기구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 받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에 대해 하향조절, 취소, 유지 중 하나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요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징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고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합병 및 제명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심의 절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회의 이의제기 이후에 확정된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이 확정된다.

제151조【징계의 집행】 ①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된 징계사항은 2주일 이내에 집행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상향 조절을 요청하는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징계 미이행에 따른 징계 상향 조절에 대한 안건 심사는 제144조제2항에 따르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제150조제1항,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단, 이 경우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한다.

제152조【특별기구연석회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들의 활동의 증진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연석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발의권을 가진 특별기구연석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를 학기별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를 지닌다.

③ 특별기구연석회의는 특별기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서는「회의진행세칙」에 따른다.

④ 특별기구연석회의는 매 학기 총학생회비 중 특별기구 배분분의 예산안·결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분배한다.

⑤ 특별기구연석회의는 특별기구들에 대한 예산과 공간 편성권을 가진다.

제153조【자치규칙】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

제154조【총학생회장단 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조가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제155조【시기】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장단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부터 임기만료일 전 7일 사이에 시행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재선거는 제15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듬해 3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재선거가 무산된 경우 해당 재선거의 재선거는 같은 해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재선거의 재선거는 차수를 표시하여 구분하며, 세부 일정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6조【선거권・피선거권】 ① 이 회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5학기 이상 재학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④ 선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재선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3호, 제4호에서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중 한 명만 해당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때
3.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5.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새로 발견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된 때

6. 그 외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60조【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61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자산・배분

제162조【자산】 ① 이 회는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 회의 자산이라 한다.

② 이 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④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

제163조【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④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

분할 수 있다.

⑤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64조【수입】 이 회 재정의 수입은 총학생회비, 학교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165조【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③ 교지대는 총학생회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한다. 교지대와 교지 편집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회계·심의

제166조【회계연도】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67조【심의의 원칙】 ① 이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예산안·결산은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그 외에 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68조【사전 심의】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결산특별위원회의 1학기 회기: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학기 회기: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총학생회비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을 사전 심의한다.

③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문서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69조【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예산안·결산 심의에 관한 특례】 사전 심의에서 의결된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제170조【인준】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결산특별위원회의 1학기 회기: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학기 회기: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③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68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친 예산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승인된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71조【재심의】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심의를 받는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 혹은 재심의에서도 예산안·결산이 부결된 기구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69조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8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 개정

제172조【개정안 발의】 ①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73조【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172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74조【개정안 심의】 ①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③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5조【개정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칙 개정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6조【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7조【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172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③ 세칙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본조를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임시규칙을 제외한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④ 회칙·세칙·규칙의 온라인 배포 시에는 조문의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178조【세칙·규칙】 이 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임시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정·개정할 수 있다.

제179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제5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발의에 관하여서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⑤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공고에 관하여서는 제173조를 준용한다.

⑥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176조를 준용한다.

제180조【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된다.

제181조【일반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일반규칙은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② 일반규칙은 제91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제182조【임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임시규칙은 특정 기간 동안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② 임시규칙은 제91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을 의결하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이 때 특정 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아니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183조【회칙 해석의 원칙】 ① 이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이 회칙에 위반되는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84조【회칙해석위원회】 ①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75조 혹은 제95조제2항, 제78조 혹은 제97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

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은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규정집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85조【규정집】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② 제1항의 규정집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편찬・배포를 담당한다.

③ 산하기구와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배포 시에는 조문의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회칙은 공포 후 48시간 후부터 시행한다.

선거시행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1호]

1958. 11. 5. 제 정	1960. 10. 28. 전부개정
1962. 11. 10. 일부개정	1980. 3. 28. 전부개정
1985. 3. 11. 전부개정	1985. 10. 10. 전부개정
1991. 9. 14. 전부개정	1995. 3. 27. 일부개정
1999. 3. 25. 일부개정	2001. 4. 2. 일부개정
2003. 4. 10. 일부개정	2004. 10. 25. 일부개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일부개정
2013. 10. 6. 일부개정	2014. 9. 28. 일부개정
2015. 10. 4. 일부개정	2016. 10. 2. 일부개정
2017. 9. 3.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2018. 9.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6~7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8~22

제2절 선거운동본부 ····· 23~29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 31~32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 33~40

제3절 선거운동 ····· 41~54

제4절 이의제기 ····· 55~56

제5절 징계 ····· 57~62

제6절 투표 ····· 63~82

제7절 투표 성립 ····· 83

제8절 개표 ····· 84~96

제9절 당선 ····· 97~98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 99~100

제5장 선거운동자금 및 선거 기록물 관리 ····· 101~102

제6장 선거시행규칙 ····· 103~104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총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이 회의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총학생회칙」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학교 당국을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과 준회원 중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이 등록 마감일 기준 5학기 이상 재학하였으며 정회원인 조
2. 이 회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후보 간 중복 추천은 가능하며, 추천은「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한다)
3.「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9조【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총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총학생회칙」·이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총학생회칙」·이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선거공영기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9.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과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한 명씩 파견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은 전원 파견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3. 각 동아리연합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관에서 해당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파견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기구에서 사퇴 공고가 게시되었을 경우 사퇴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1.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3.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각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보궐선거는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직 혹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각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제9조와 제12조에 명시된 직무 및 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서약서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선출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임사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이 회 정회원·준회원이 아닐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4조【위원의 사임·추가임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

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6조【개의·의결요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9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선거관리위원회】 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의결기관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사임하면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 이후에도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집행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집행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집행국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은 사임한 이후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집행국은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요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각 동아리연합회는 집행국이 집행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제22조【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임기 개시와 함께 해산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3조【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24조【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정회원・준회원이어야 한다.

제25조【모집】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제33조제2항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유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예비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선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4조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

③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 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28조【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집행요원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9조【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총학생회칙」중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기구의 사무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
3. 총학생회 생활방 등 총학생회실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4. 그 외에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③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1조【선거 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부터 임기만료일 전 7일 사이에 시행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3일, 예비후보 등록 공고 기간을 2일,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선거운동 기간을 9일 이내, 투표일을 3일(투표율 미달 시 투표일을 최대 2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외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3조제2항의 예비후보 등록 마감 시각
3. 제33조제2항의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제34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5. 제34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7. 제10조제7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3조【예비후보 등록・추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예비후보 등록 기간 마감 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2.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파일로 제출한다)

③ 예비후보 등록 마감 시각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④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는 후보 등록 이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⑤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⑥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예비후보 등록 때 제출한 핵심 선거공약 및 핵심구호를 병기할 수 있다.

⑦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4조【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2.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추천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또는 정회원 등록 증명서・휴학증명서 각 1부

4.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포스터용 사진(파일로 제출한다)

7. 출마소견문(A4 사이즈 1매로 하며 파일로 제출한다)

8.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파일로 제출한다)

9. 제28조와 제29조에 명시된 선거운동본부의 업무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35조【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6조【후보 등록】 제35조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7조【규칙 확정 회의】 ① 제35조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30조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03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3.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6.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39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두 명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문서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40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예비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
2.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
2. 추천인 수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이력
4. 선거운동본부명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
5.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약서
6.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7. 포스터용 사진

③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2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 시각 다음 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각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날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3. 제33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4. 설문조사
5. 후보자 추대모임
6. 제25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③ 제2항제5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정한다. 대자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및 지역선거관리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
4.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5.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6. 현재 단과대학・독립학부 부학생회장, 학부・과・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

장, 특별기구 기구장의 직에 있는 자

7.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8. 이 회의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선거관리위원 및 집행국원이 사임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5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유세

2. 공청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6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7조【합동유세】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유세를 실시한다.

②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2회 이하로 시행한다.

③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④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⑦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⑨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8조【공청회】 ① 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공청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50조 및 제51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크기 이하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1조【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횟수에 상관없이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③ 유인물은 총 20,000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유인물에 발행 시점까지 사용한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주고,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24시간 동안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단, 이 때는 대자보의 수량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유인물 크기와 제3항의 유인물 부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제4항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2조【정책자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②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3,000부 이내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정책자료집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한다.

⑦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3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

를 제한하고, 해당 아이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아이디를 공고한다.
⑤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그 밖에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4조【선거운동본부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5조【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⑥ 정회원·준회원은 200명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6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계

제57조【징계】 징계는 이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제5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9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2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2. 제26조제3항, 제26조제5항, 제4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에 문제가 있을 때
3. 제27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4. 제49조제3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5. 제54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6. 제55조제5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7.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3. 제25조제4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때
4. 제26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5. 제30조제4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6.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7. 제44조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8. 제46조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47조제8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48조제2항의 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공청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11. 제49조제4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2. 제50조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3. 제51조제2항의 유인물 크기 또는 제3항의 유인물 부수를 어긴 경우

14. 제51조제4항의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때

15. 제52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6. 제53조제5항의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7. 제54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18. 제93조제2항의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9.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1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33조제7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4. 제43조제3항의 대자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5. 제43조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9조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할 때

7. 제101조제2항의 선거운동자금 제한액을 넘겼을 때

8.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9.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10.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1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3.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4.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5.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62조【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재심의는 징계의 유지 또는 하향 조절을 결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63조【투표방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총학생회칙」제45조에 따라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이 세칙을 준용할 때「총학생회칙」제42조제2항에 따른 규칙은 해당 학생총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해당 규칙은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생총투표시행규칙으로 본다.

제64조【투표관리】 ①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특정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 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지역선거관리위원장에 준한다.

③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5조【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3일간 진행한다.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 3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투표 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④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권”란을 두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⑥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두 칸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칸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6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구로 송부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9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0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2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3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⑥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제54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은 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76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8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9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80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81조【투표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82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3조【투표 성립 요건】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8절 개표

제84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5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6조【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7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8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9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90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5.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때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91조【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단, 명부상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9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3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94조【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두 명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5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

제97조【당선의 기준】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개표 결과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 후보로 한다. 단,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가 최다 득표한 경우 당선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유효투표 중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보다 많을 경우 그 후보를 당선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일 때에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9조와 제100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단, 한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가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조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단, 1위 득표 조와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 중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조가 있을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조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4.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에 기표한 사람의 수를 넘을 때
6.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을 넘지 않을 때

제98조【당선 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99조【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에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에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에는 재투표를 시행한다.

⑤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학생회칙」 제15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투표율이 정회원 3분의 1을 넘지 않았을 때
3.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4. 재투표에서도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6.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을 넘지 않을 때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운동자금 및 선거 기록물 관리

제101조【선거운동자금】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운동자금에 제한을 두고 일부를 보전한다.

② 선거운동자금 제한액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③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 선거운동자금 제한액을 넘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1회를 준다.

④ 선거운동자금은 당해 선거공영기금의 5%에서 25% 사이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만큼 보전한다. 이 때 각 선거운동본부별로 보전받는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4항의 선거운동자금 보전액을 책정하여 공고한다. 단, 이 공고에는 입후보자 등록 이후 보전받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공고 후 지체 없이 선거운동자금을 보전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운동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운동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그 외에 선거운동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선거 기록물 관리】 ①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② 그 외에 선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03조【선거시행규칙】 ①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총학생회칙」 제45조에 따라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이 세칙을 준용할 때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총투표시행규칙이라 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학생총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제104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제37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③ 제103조제2항에 따른 각 학생총투표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중앙투표관리위원이 발의하고, 중앙투표관리위원회 재적 중앙투표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투표관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운용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2호]

2004. 4. 25. 제 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전부개정 2014. 9. 25. 일부개정
2017. 3. 19. 일부개정 2017. 9. 3. 일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5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 6~11
제3장 회계
제1절 총수입·총지출 ····· 12~13
제2절 예산·결산 ····· 14~15
제4장 기구 별 재정
제1절 통칙 ····· 16~17
제2절 의결기구 재정 ····· 18
제3절 집행기구 재정 ····· 19~28
제4절 산하기구 재정 ····· 29~32
제5절 특별기구 재정 ····· 33~34
제5장 기타 재정
제1절 선거공영기금 ····· 35
제2절 자치예산 ····· 36~37
제3절 교지대 ····· 38~40
제6장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 ····· 41~44
제7장 재정운용규칙 ····· 45~46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5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총학생회칙」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6조【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회의 산하기구・특별기구와 총학생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③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예산안・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⑤ 예산안・결산의 작성은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할 때「사무처리세칙」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안・결산 삭감의 원칙】 ① 예산안・결산을「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10%, 30%, 50%의 비율 중에서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안・결산이 통과되지 않아 총학생회비 지급을 삭감할 때, 삭감된 금액은 삭감이 된 기구가 속한 기구의 나머지 지급 대상 단체에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타 영역에 속한 단체의 수입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단, 집행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배분의 방식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

1. 삭감된 기구가 집행기구일 때: 산하기구에 삭감액의 80%, 특별기구에 삭감액의 20%를 배분하고 각 기구별로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2. 삭감된 기구가 산하기구일 때: 산하기구에 제31조와 제32조의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3. 삭감된 기구가 특별기구일 때: 특별기구에 제34조의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제8조【총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는 이 회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②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의 예산안・결산을 공개하는 단체의 재정 집행 또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총학생회비 배분은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총학생회칙」제166조에 따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집행・결산한다.

제11조【재정운용회의】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총학생회칙」제115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구와 각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재정 담당자가 참석하는 재정운용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정운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 작성
2.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③ 집행기구의 재정 담당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제출할 예산안・결산을 작성하기 전에 재정운용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여서 논의하고, 해당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등록자 수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재정 담당자는 재정운용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재정운용회의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수입・총지출

제12조【총수입】 ①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학생회비 수입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③ 사업별 후원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하며,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총지출】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2절 예산·결산

제14조【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② 같은 분기 예산상 동일한 항목이 있을 경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전년도 대비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의 작성】 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 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② 같은 항목 예산이 있을 경우 각 항목 별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예산 대비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각 기구의 결산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별 재정

제1절 통칙

제16조【총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비는「총학생회칙」제165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매 학기 등록

금 납부기간 전에 고지한다.

제17조【분배율】 총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집행기구: 40%
2. 산하기구: 40%
3. 특별기구: 10%
4. 자치예산: 10%

제2절 의결기구 재정

제18조【의결기구 재정】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 작성 시 작성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에 포함하여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3절 집행기구 재정

제19조【집행기구 재정】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제20조【고정자산】 ① 중앙집행위원회는「총학생회칙」제163조제6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것을 고정자산으로 한다.

1. 가액이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자산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
3.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가 고정자산으로 정한 자산

③ 제1항의 목록 작성 서식에는 각 고정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명·규격(모델명)·수량
2. 가액
3. 구입년월일
4. 사용처

제21조【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40%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2. 정기사업비
3. 비정기사업비
4. 국서・위원회별 재정
5. 그 밖에 재정
6. 이월금

제22조【운영비】 ①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정기사업비】 정기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 4・18대장정, 석탑대동제, 농민학생연대활동, 고연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4조【비정기사업비】 비정기사업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5조【국서・위원회별 비용】 국서・위원회별 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서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26조【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제27조【차기 집행기구 이월금】 2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10% 이상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28조【선거공영기금】 2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15% 이상을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기금으로 배정한다.

제4절 산하기구 재정

제29조【산하기구 재정】 ① 산하기구 재정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각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집행위원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30조【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40%를 산하기구에 배정한다.

제31조【단과대학・독립학부 재정】 ① 산하기구에 배정된 금액의 80%를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배정된 금액 중 금 500,000원을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 때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정운용회의를 통해 제2항의 인원 비율에 따른 배분 이외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생 단과대학·독립학부는 재정운용회의를 통해 지급액을 논의한다.

제32조【동아리연합회 재정】 ① 산하기구 재정의 20%를 동아리연합회에 배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에 배정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동아리연합회에 배분한다.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동아리연합회: 75%
2. 애기능동아리연합회: 25%

제5절 특별기구 재정

제33조【특별기구 재정】 ① 특별기구 재정은 각 특별기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특별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재정 담당자가 있는 기구는 재정 담당자에게, 없으면 해당 특별기구의 기구장에게 있다.

제34조【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10%를 특별기구에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기구에 배정된 금액 중 금 500,000원을 각 특별기구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각 특별기구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필요 예산의 정도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단, 한 특별기구가 전체 특별기구 재정의 20%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제5장 기타 재정

제1절 선거공영기금

제35조【선거공영기금】 ① 선거공영기금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시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된다.

② 선거공영기금의 수입은 제28조에 따른 선거공영기금으로 한다.

③ 선거공영기금 운용의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④ 선거공영기금의 결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후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의되면 결산을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2절 자치예산

제36조【자치예산】 ① 자치예산은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가 아닌 자치단체의 활동에 총학생회비 수입을 지원함으로써 학내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한다.

② 자치예산 운용의 책임은 자치예산을 지원받은 자치단체에 있다.

제37조【예산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10%를 자치예산으로 배정한다.

② 자치예산 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교지대

제38조【교지대】 ① 교지대는 각 교지편집위원회가 교지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관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② 교지대 운용의 책임은 각 교지편집위원회에 있다.

제39조【예산배정】 교지대는 학생회비와 별도로 관리되며 “고대문화”와 “석순”의 교지편집위원회가 협의하여 배정한다.

제40조【자치언론기금】 ① 건전한 학내 자치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지대의 15%를 자치언론기금으로 배정한다.

② 자치언론기금의 운용은 각 교지편집위원회와 자치언론으로 구성되는 자치언론협의회가 담당한다.

제6장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

제41조【인상률】 총학생회비·교지대는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조정 절차】 ①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안은 「총학생회칙」 제165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매 2학기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총학생회비·교지대를 배분받는 각 기구와 자치언론에 총학생회비·교지대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은 「총학생회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재심의】 정회원·준회원 600명의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의 재심의를 요구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제44조【금액 조정의 발효】 총학생회비·교지대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연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7장 재정운용규칙

제45조【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의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의진행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3호]

2012. 10. 28. 제 정 2013. 3. 31. 일부개정
2013. 10. 6. 일부개정 2017. 9.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6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7~15
제3장 회의의 구성 ····· 16~25
제4장 안건 ····· 26~32
제5장 발언 ····· 33~39
제6장 동의 ····· 40~49
제7장 표결 ····· 50~54
제8장 회의록 ····· 55
제9장 소규모회의 ····· 56
제10장 회의진행규칙 ····· 57~58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각종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회의체”라 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의결”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4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이 회의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회의에 적용한다.

②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6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총학생회칙」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7조【공개의 원칙】 ① 이 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 회원은 이 회 회의의 방청권을 가진다. 단,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 회의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8조【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9조【일의제의 원칙】 이 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론자유의 원칙】 ① 이 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②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③ 발언권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평등의 원칙】 이 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다수결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일사부재의의 원칙】 ① 한 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체 또는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2항,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4항에 따른다.

② 한 번 처리된 안건을 같은 회의체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가진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한 번 처리된 안건을 상위 회의체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회의체의 안건 발의 요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체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⑤ 이 회의 회기는「총학생회칙」제15조에 따라 분류한다.

제15조【회기 불계속의 원칙】 ① 이 회 회의체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된다. 단,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회의체로 안건 위임되거나,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다.

② 안건 위임은 해당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③ 기한부 연기동의는 제47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④ 정기적으로 개의되는 회의체는 한 회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의 안건 위임 또는 기한부 연기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6조【구성】 이 회 각 회의체는「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17조【의결권】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이 회와 특정 구성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이 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중앙운영위원회는「총학생회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개의 직후 인준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① 이 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회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회의체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서기장과 서기】 ① 이 회 각 회의체는 개의 직후 구성원 중 한 명을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서기장으로 임명한다. 서기장은 필요에 따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서기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③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한다.

제20조【소집】 ①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제21조【의사정족수】 이 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회순】 ① 개의로부터 산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의선언
3. 의례
4. 의장인사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순서 확정
7. 안건심의
8. 산회선언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와 제1항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용어의 정의】 ① 이 세칙에서 “개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개의”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이 세칙에서 “유회”라 함은 개의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의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정회”라 함은 회의 도중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산회”라 함은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세칙에서 “폐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제24조【회의의 산회·유회·정회】 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

나,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면 의장은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재소집한다.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재소집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회의체에 제출된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산회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하위 회의체에 위임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단, 하위 회의체로 위임할 수 없는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25조【의사조정위원회】 ① 회의 개의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사조정위원회는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제4장 안건

제26조【안건】 ①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제27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의 제출은「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안건의 제출은「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철회】 안건의 제출자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9조【안건 심의】 ①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30조【토론·동의】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1조【안건의 처리과정】 ①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② 안건 심의 중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안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총학생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발언

제33조【발언권】 ①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② 발언권을 얻은 자는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③ 구성원은 이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발언 횟수와 시간】 ① 회원은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하여 3회까지 발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신상발언】 신상발언이라 함은 자신의 신상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제36조【의사진행발언】 ①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이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② 의사진행발언은 규칙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으로 한다.

제37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의 발언허가】 ①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신상발언, 규칙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8조【의사진행발언의 처리】 ①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결정 중 규칙발언 이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회원의 항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항의를 회의체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결정은 번복된다.

③ 규칙발언은 의장이「총학생회칙」・세칙・규칙 등을 참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장 동의

제40조【동의】 동의는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해 회의 중에 새롭게 토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동의의 성립·상정】 ① 속회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는 구성원 한 명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②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에 따른 의제 속에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2조【동의의 종류·서열】 ① 동의에는 속회,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 재심의동의 등이 있다.

② 동의들 사이의 서열은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순서와 같으며, 상위 동의가 계류 중인 때에 하위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

제43조【준용】 동의에는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4조【재심의동의】 ①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② 일단 회의가 산회되면 재심의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③ 재심의동의에 의해 제출된 재심의안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수정동의】 ① 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②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으며, 개별방식에는 삽입, 삭제, 대체가 있고 포괄방식에는 대안이 있다.

③ 수정동의에 의해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제32조에 따라 의결한다. 복수의 수정동의에 의해 복수의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이를 일괄 제출받아 택일표결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수정안 또는 대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제46조【회부동의】 ①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② 안건 일부의 처리를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

의체가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위원 중 한 명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이 회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안건을 돌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회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⑥ 회부동의가 성립되면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부안을 의결한다. 회부안이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연기동의】 ①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② 연기동의에 일정시간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란 명시가 없으면 다음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 연기하자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연기동의에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기한부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자는 동의이다.
⑤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제출된 기한부 연기안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제48조【토론종결동의】 ①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②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 명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의에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토론을 종결시킨 후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속회동의】 ① 속회동의는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자고 하거나 다음 일시를 정하여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이다.
② 속회동의는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속회동의의 제출은 의장에게 한다.
③ 속회동의가 제출되면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조정위원회의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거나 회의를 속개할 일시를 정한다.

제7장 표결

제50조【표결】 ① 안건과 동의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과 동의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의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서 정하여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⑤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한다. 단,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표를 정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52조【택일표결방법】 ① 택일표결에는 일괄표결과 순차표결이 있다.
② 일괄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들을 일괄적으로 표결하여 과반수를 얻은 안을 다시금 찬반표결에 부친다.
③ 제2항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상위 2개 안을 결선투표에 부쳐 상대적으로 다수인 안을 찬반표결에 부친다. 이 때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의장이 추첨으로 정한다.
④ 순차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들 중 회의체에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의결정족수를 만족하는 안이 나오면 표결을 중단하고 해당 안이 가결된다.

제53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8장 회의록

제55조【회의록】 ① 이 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의·정회·유회 또는 산회의 일시
3. 개의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4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표결 결과(구성원이 제4조에 해당할 때, 기명투표는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8. 하위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 안건 위임될 때 위임되는 안건의 제목

9.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그 밖에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④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날인하여 공개한다.

⑤ 소규모회의는 제1항의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소규모회의

제56조【소규모회의】 ① 소규모회의라 함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 내외인 회의체를 말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이 넘더라도 소규모회의로 본다.

③ 소규모회의는 제18조제4항의 의장의 토론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소규모회의는 제20조의 회의 일주일 전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소규모회의는 제34조제1항의 발언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소규모회의는 제41조제1항의 모든 동의의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0장 회의진행규칙

제57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제58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다.

②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4호]

2013. 3. 31. 제 정	2013. 10. 6. 전부개정
2017. 1. 22. 일부개정	2017. 9. 3. 전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6
제2장 사무 처리 ····· 7~9
제3장 문서의 작성 ····· 10~15
제4장 문서의 서식 ····· 16~21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 22~26
제6장 사무처리규칙 ····· 27~28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의 사무 처리의 원칙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회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작성자"라 함은 문서를 생산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책임자"라 함은 사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수신자"라 함은 사무 처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기록물"이라 함은 이 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⑥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자"라 함은 이 회의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기록물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사무 처리 및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에 적용한다.

제6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총학생회칙」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사무 처리

제7조【사무 처리의 원칙】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무의 분장】 사무 처리의 책임자는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서별 사무를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위원간의 업무량이 균형 있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그 외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그 외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10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공고문서: 공고 또는 일정한 안내사항을 산하기구 혹은 회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3. 지시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그 산하기구나 소속 위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문서
4. 비치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명단 등의 문서
5. 처리문서: 회원이 이 회의 각 기구에 허가, 신청,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부문서, 내부문서, 안건지 등의 문서

제11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①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을 때 성립한다. 단, 서명은 자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전자문서의 도달은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문서의 생산 의무】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미리 그 조사·기획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의 표준화 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제13조【문서의 생산】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인쇄물 두 가지 형태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문서에는 기록물 책임자와 작성자의 소속, 지위,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이 회의 각 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⑤ 작성자가 여럿일 때는 각 작성자가 기록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14조【문서의 전자적 생산·관리】 이 회의 각 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제4장 문서의 서식

제16조【의결기구 문서의 서식】 ① 의결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결석계
2. 회의 소집요구서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4. 회의록
5. 회의 자료집
6. 회의 안건지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해당 회의체의 의장이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제1항의 규칙에 따른다.

④「총학생회칙」제47조제4항, 제5항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록절차를 위해 제출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에게 제출된 등록 신청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등록 신청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한다.

⑤「총학생회칙」제141조제1항제4호와 제7호의 서식은 제1항의 규칙에 따른다.

제17조【집행기구 문서의 서식】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각종 공문
2. 중앙집행위원 명단

제18조【산하기구・특별기구 문서의 서식】 ① 산하기구・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자치규칙
2. 자치규칙 개정 작업과 관련된 기록물

② 산하기구는 필요할 때 산하기구의 의결기관・집행기관・산하기관에서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문서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선거 문서의 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중앙선거관리위원 해임 요구서, 사직 요청서, 추가임명 동의안이 첨부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요구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 명단
5. 각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공고문
6. 각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7. 선거 공고문
8.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자 공고문
9. 사과문
10. 정책자료집
11. 이의제기 안건지
12. 각 투표소의 참관시간표
13. 개표 결과
14. 당선 공고문

제20조【재정 문서의 서식】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각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
2. 교지대의 결산

제21조【회칙・세칙・규칙 문서의 서식】 회칙・세칙・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대표자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정 이력
2.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안
4. 개정안 공고문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제22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①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②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집행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할 의무를 지닌다.

③ 기록물 관리기관과 협의한 산하기구・특별기구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산하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할 의무를 지닌다.

④ 기록물 관리기관은 이 회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

제2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책임자는 상호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기록물철로 묶어서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③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

1. 집행기구・산하기구의 의결기관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
2. 집행기구・산하기구의 선거에서 생산된 정책자료집, 유인물 등의 각종 선거 관련 자료
3. 그 밖에 기록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기록물

②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제25조【기록물 관리기관】 ① 이 회는 생활도서관을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의 총괄・조정과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2. 기록물 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과 기록물 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과 표준화
4.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6.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이 회의 집행기구는 기록물 관리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공개청구】 ①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②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쇄 기록물의 원본은 대여할 수 없으며, 특별기구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통해서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은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리규칙

제27조【사무처리규칙】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의
3. 기록물 관리기관의 발의

②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록물관리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5호]

2013. 3. 31.	제 정	2013. 10. 6.	전부개정
2017. 3. 19.	일부개정	2017. 9. 3.	폐 지

기록물관리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6호]

2017. 1. 22. 제 정 2017. 9. 3. 일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5
제2장 구성 ····· 6~10
제3장 회의 진행 및 업무 ····· 11~17
제4장 안건의 처리 ····· 18~20
제5장 해산 ····· 21
제6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 22~2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그 회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라 함은 「총학생회칙」 제54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된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대표자와 각 기구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예산안과 결산에 적용한다.

제5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총학생회칙」 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구성

제6조【구성】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개강일 30일 이전부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최대 두 명
3. 각 동아리연합회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최대 두 명

② 예·결산특별위원이 없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발언권을 가진 재정 담당자 한 명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을 대신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장】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결산특별위원이 되는 자 중 한 명으로 하여야 하며,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④ 위원장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예·결산특별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준】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업무를 개시하며, 구성 이후 최초

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후 인준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 보고 및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다룬다.

②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기존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무효가 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안·결산 처리를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 소집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3장 회의 진행 및 업무

제11조【의장】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의장은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소집】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예·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3조【개의·의결요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업무】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총학생회칙」 제168조에 따른 총학생회비 예산안·결산의 사전 심의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사전 심의
2.「총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른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의 심의 및 인준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제15조【자료의 사전제출】 제14조제1항에 의해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받는 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요구】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시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 재정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의 회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회의진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4장 안건의 처리

제18조【사전 심의된 예산안·결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총학생회비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9조【가결된 예산안·결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이 가결된 경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결된 예산안·결산】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된 경우 해당 산하기구·특별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 당일까지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예산안·결산의 수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심의를 받는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하기구·특별기구에게는 「총학생회칙」 제171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제5장 해산

제21조【해산】 당해 학기의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학기의 업무 및 보고가 종료되었을 경우 해산한다.

제6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예·결산특별위원의 발의

② 각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예·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예·결산특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예·결산특별위원 과반수 찬성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세칙 제7호]

2017. 4. 9. 제 정 2017. 9. 3. 일부개정
2018. 4.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5

제2장 적용범위 및 제척, 기피, 회피

제1절 적용범위 ····· 6~8

제2절 제척, 기피, 회피 ····· 9~13

제3장 사건관계자

제1절 통칙 ····· 14~15

제2절 피해자 ····· 16~18

제3절 피의자 ····· 19~21

제4장 절차

제1절 통칙 ····· 22~23

제2절 신고 및 접수 ····· 24~26

제3절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 ····· 27~32

제4절 조사 및 결과의 보고 ····· 33~35

제5절 징계 및 이의제기 ····· 36~45

제5장 무고 및 위증 ····· 46~48

제6장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 ····· 49~50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 회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의 보편적이고 불가침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그리고 「총학생회칙」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인권침해사건”이라 함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학력, 병력,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등을 이유로 회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주체인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피의자”라 함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발생주체로 신고 되어 지목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사건관계자”라 함은 피해자, 피의자, 대리인, 참고인, 증인, 내부제보자 등 해당 인권침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이 세칙에서 “2차 피해”라 함은 피의자나 그 외 사람들이 인권침해사건을 은폐 또는 정당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2차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이 회는 「총학생회칙」 제5조제1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② 인권침해사건은 학생자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에 있어서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절차는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편향됨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⑤ 피의자에 대한 징계는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⑥ 피의자에 대한 징계는 개개인의 죄질에 비례하여 이 세칙에서 규정한 징계 수위에 맞추어 처분되어야 한다.

⑦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회칙 또는 세칙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인권침해사건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징계가 개정 전 회칙 또는 세칙보다 가벼운 때에는 개정된 회칙 또는 세칙을 따른다.

⑧ 징계가 확정된 후 회칙 또는 세칙의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인권침해사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대표자와 각 기구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총학생회칙」제183조와 제18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적용범위와 관할 및 제척, 기피, 회피

제1절 적용범위 및 관할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이 회의 회원일 경우 적용한다. 단, 제18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세칙 제정・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해석이나 규정에 의한 적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관할】 ① 이 세칙은「총학생회칙」제3조에 의해 이 회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이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이 회의 각 기구, 자치단체가 주최한 다른 지역에서의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
2. 타 대학과의 연합 활동에서 발생하였고 제6조를 만족하는 사건
3. 그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제6조를 만족하는 사건

③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 1명이 야기한 여러 사건
2. 수명이 공동으로 야기한 사건
3. 수명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야기한 사건
4. 그 외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에서 병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8조【미수범・방조범】 ① 이 세칙은 미수범에도 적용한다.

② 이 세칙은 방조범에도 적용한다.

제2절 제척, 기피, 회피

제9조【제척의 원인】 중앙운영위원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
2.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대리인인 경우
3. 해당 사건의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10조【기피의 신청】 ①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는 다음 경우에 중앙운영위원과 전체학생대

표자회의 대의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2. 중앙운영위원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불공평한 의결을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피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기피신청의 대상이 중앙운영위원일 경우 해당 중앙운영위원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기피신청의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회피의 신청】 ① 중앙운영위원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의 의결에 의한다.

② 회피신청의 대상이 중앙운영위원일 경우 해당 중앙운영위원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장 사건관계자

제1절 통칙

제14조【사건관계자의 권리】 ① 사건관계자는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건관계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건관계자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사건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후 조사내용 확인, 검토를 위한 조서열람을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열람은 본인의 조서에 한한다.

⑤ 사건관계자는 조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건관계자의 의무】 ① 사건관계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열람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건관계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관계자는 다른 사건관계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2절 피해자

제16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④ 피해자는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1명으로 한다.

제17조【피해자의 의무】 피해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진실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자보호규칙】 피해자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피해자보호규칙」에 따른다.

제3절 피의자

제19조【피의자의 권리】 ①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의자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의자는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피의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1명으로 한다.

⑤ 피의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피의자의 의무】 ① 피의자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보복 및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② 피의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진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무죄추정원칙】 피의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4장 절차

제1절 통칙

제22조【각 기구의 의무】 ①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진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사건관계자에게 이 세칙의 존재를 고지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절차】 ①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신고
2. 접수
3.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의 구성
4. 조사 및 결과의 보고
5. 징계의 의결
6. 이의제기
7. 공고 및 집행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혹은 학부·과·반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의 소실 등으로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가 없으면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이 세칙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신고 및 접수

제24조【신고】 ① 이 회의 회원은 인권침해사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소속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다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2.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같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이나 소속된 학부·과·반 학생회가 다를 경우: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3.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같은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일 경우: 학부·과·반 운영위원회

② 사건을 접수한 기구는 신고인에 관한 정보,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한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과·반 운영위원회는 적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결기관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에 해당 인권침해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25조【신고의 번복·철회】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는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각 기구에 접수된 이후에는 번복·철회할 수 없다.

제26조【접수】 ①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또는 각 학부·과·반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해당 기구에 인권침해사실이 보고될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신고 접수 여부를 의결로써 정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또는 각 학부·과·반 운영위원회가 인권침해사건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송된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

제27조【지위】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총학생회칙」제82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신고된 인권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다.

제28조【의무】 ① 대책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대책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29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 5명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자가 소속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호선에 의해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0조【인준 및 해산】 ①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해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해당 대책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만 권한 및 효력을 가진다.

③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해당 대책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1조【업무】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2. 조사 결과 보고
3. 중앙운영위원회로의 징계 요구(단, 징계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한다)
4. 그 외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의 징계 요구 안건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의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의 상정이 부결된 경우 대책위원회는 일주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책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중앙집행위원의 파견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중앙집행위원은 파견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위원에 대한 징계】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 사건의 처리 과정 중 2차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② 해당 대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제4장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사건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속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또는 학부·과·반 학생회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책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제2항에 의해 대책위원회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대책위원회 위원을 충원한다.

제4절 조사 및 결과의 보고

제33조【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다.

1. 사건 경위

2. 사건관계자의 진술

3.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증거

② 대책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결과의 보고】 ① 대책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 사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 경위 및 소견

2. 제1호에 관계된 제반 증거

3. 제35조에 의한 징계 요청

제35조【징계의 요청】 ① 대책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와 피의자가 소속된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및 학부·과·반 운영위원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차원에서 조사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와 피의자가 소속된 학부·과·반 학생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부·과·반 학생회 차원에서 조사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학부·과·반 운영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 받은 각 운영위원회는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수위는 각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하는 상위 회의체에서 정한다.

제5절 징계 및 이의제기

제36조【징계에 관한 사항】 ①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경고

2.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공개 사과문 게재

3.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4. 제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피의자가 2차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가중 징계한다.

제37조【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35조에 의해 상정된 징계 요구 안

건을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심의된 징계 요구 안건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의결된 징계 요구 안건을 의결로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의결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8조【자료의 사전 보고】제37조제3항에 의한 안건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2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4조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결과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39조【피해자와 피의자의 출석】①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제26조에 의한 해당 안건이 진행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단, 해당 대리인의 출석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2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40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징계 요구 안건 심의 절차】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제37조제3항에 의한 징계 요구 안건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사건 경위·결론 보고 및 제37조제3항에 의한 징계 요구 안건 심의
2. 증인 및 참고인 신문
3. 찬반 토론
4.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최후변론
5. 피의자 또는 피의자 대리인의 최후변론
6. 징계 수위의 최종결정
7. 징계의 의결

② 제1항제3호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 시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피의자와 그 대리인은 의장의 동의를 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자료 부실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책위원회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수위의 최종결정】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37조에 의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 요구 안건의 징계 수위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때 징계 요구 안건의 징계 수위의 수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징계 의결 및 표결방법】① 제40조제1항제6호까지의 진행이 완료되었을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표결로써 의결을 진행한다.

②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징계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40조의 과정에 따른 징계사항이 의결되면 징계의 의결 시로부터 일주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둔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징계가 결정된 피의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 받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에 대해 하향조절, 취소, 유지 중 하나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요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징계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징계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1회의 이의제기 이후에 확정된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이 확정된다.

제4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의결 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된 징계는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집행한다.

제45조【징계의 공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사유, 내용, 기간을 공고한다.

제5장 무고 및 위증

제46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무고”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② 이 세칙에서 “위증”이라 함은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이다.

제47조【징계에 관한 사항】 ① 무고를 한 자와 위증을 한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경고
2.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공개 사과문 게재

② 제1항에 대한 징계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대한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절차】 ① 무고 및 위증에 관한 절차는 제4장의 내용을 준용한다.

② 인권침해사건과 무고 및 위증에 대한 신고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동일한 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과 동시에 접수된 무고 및 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위증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

제49조【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대책위원회 위원의 발의

② 각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 이후부터 시행한다.